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중재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

청구인

대한민국

피청구국

피청구국의 중재판정문 해석·정정 요청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2023년 8월 1일

목차

I.	서론	1
II.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산정을 뒤집으려는 대한민국의 시도는 UNCITRAL 규칙 제38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2
A.	제 38 조의 범위	2
B.	대한민국의 정정 요청	5
1.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는 단순명백한 오류가 없습니다.....	6
2.	대한민국의 정정 요청은 제38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9
III.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문에서 제37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호성을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11
IV.	신청취지	14

I. 서론

1. 2023년 7월 18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2013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하 “UNCITRAL 규칙”) 제 37조 및 제 38조에 따라 중재판정문 해석·정정 요청서(이하 “한국의 정정 요청”)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정 요청은 중재판정부의 2023년 6월 20일자 중재판정문(이하 “중재판정문”)에 대한 정정 및 해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재판정부의 서신에 따라, 청구인은 한국의 정정 요청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바이며, 한국의 정정 요청을 전부 기각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2. 청구인이 본 답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UNCITRAL 규칙 제 38조상 중재판정부는 기계적·사무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집니다. 중재판정부가 세후 추가지급금(Top Up Payment)을 사용한 것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습니다만, 설명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요청한 일련의 정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재판정부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자신의 결정을 재평가해야만 하는 바, 결국 한국의 정정 요청은 손해 산정에 대한 제3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아래 제 II 장 참조).
 - (ii) UNCITRAL 규칙 제 37조는 판정의 문구나 논리에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판정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중재판정문에는 판정 전 이자와 관련 실제로 모호한 점이 없습니다. 중재판정문은 판정 전 이자를 한국 법정이율로 계산하되, 판정일 당시의 원화/미국 달러화 환율을 반영하여 미국 달러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명 요청은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합니다(아래 제 III 장 참조).
 3. 본 답변서의 제출은 청구인의 2023년 7월 20일자 중재판정문 정정 요청(이하

“청구인의 정정 요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¹ 청구인은 해당 요청을 통해 한국의 정정 요청에 일부 답변하는 동시에 그 일체에 대해 답변할 권리를 보유한 바 있으며, 본 답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아울러, 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증 **CLA-210** 부터 **CLA-213** 으로 함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II.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산정을 뒤집으려는 대한민국의 시도는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A. 제 38 조의 범위

4.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²,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최종 중재판정문과 함께 종료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³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UNCITRAL 규칙 제 38 조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중재판정문에 대한 정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38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⁴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오탈자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정당하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통지 후 30 일 이내에 스스로 이와 같은 정정을 할 수 있다.

¹ 청구인의 정정 요청, 각주 2.

² UNCITRAL 규칙, 제34(2)조; 1996년 영국 중재법, **Exh CLA-210**, 제58(1)항.

³ *Fidelitas Shipping Co. Ltd. v. V/O Exportchleb* [1966] 1 Q.B. 630, **Exh CLA-213**, 644면(Diplock LJ) (“특수한 사건의 형태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인은 법원이 중재판정문의 재심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 중재인의 관할권이 부활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쟁점에 대한 임기가 만료된다.”); *Emirates Trading Agency LLC v. Sociedadede Fomento Industrial Pvt Ltd* [2015] EWHC 1452 (Comm), **Exh CLA-212**, 제26항(Popplewell J) (“중재인이 유효한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인로서의 권한은 종료되고, 그 권한 및 의무에 관하여 이른바 임기 만료에 해당한다는 보통법상의 확립된 규칙이 있다”).

⁴ UNCITRAL 규칙, 제38(1)-(2)조.

5. 따라서 제 38 조는 모든 주요 국제 중재 규칙에서 확인되는 형태의 “경정 규칙(slip rule)”의 일종이며,⁵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계산상 오류, 오타자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 또는 누락”을 정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표현과 각 구성요소들은 해석의 여지없이 평이하며, 하나의 개념으로 의도된 것이 명백합니다. 즉, 본 조항이 정정을 허용코자 하는 “계산상” 오류는, 동 조항에 의해 마찬가지로 정정이 허용된 “오타자” 등과 동등한 수준의 오류인 것입니다.
6. 한국이 정정 요청에서 인용한 법적 근거들 역시 제 38 조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⁶ 예를 들어, 한국이 인용한 해설서는 제 38 조의 “엄격한 범위”를 언급하면서,⁷ “명백한 실수의 정정은 설명이 아니라, 판정 후 정정 신청의 대상이다.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내용도 다시 해석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기술적 검토만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⁸

⁵ 예를 들어, 2018년 HKIAC 규칙 제38조; 2021년 ICC 규칙 제36조; 2020년 LCIA 규칙 제27조; 2012년 PCA 규칙 제38조; 2023년 SCC 규칙 제47조; 2016년 SIAC 규칙 제33조 참조.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24장, 10면(2021년 ICC 규칙 제36조의 정정 규칙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관의 규칙도 중재인들에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해당 권한을 좁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함)(강조표시 추가)도 참조.

⁶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24장, 10면(PDF) (“임기 만료 원칙의 예외로서 정정을 인정하는 목적은 명백한 누락이나 실수를 정정하고 중재판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구제를 명령하는 중재판정문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결과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의도를 변경하거나, 법적 분석을 수정하거나, 추론을 변경하거나, 판단을 변경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 . 이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제한적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정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ICSID 중재판정부의 원칙을 인용함); N.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7th ed. 2023), **Exh RLA-176**, 제10.14항(“일반적으로 관련 중재 규칙 또는 중재를 규율하는 법률에 계산상 오류, 오타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는 주로 중재판정부의 문면상 분명한 ‘경정’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⁷ L.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ICCA Congress Series No. 15)* (A. Jan van den Berg ed., 2011), **Exh RLA-174**, 283면(“중재판정부는 정정 조항이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며 중재판정문에 대한 항소로서 제기될 수 없음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록의 진정한 목적을 상당히 자주 재정의하였다. [2013년 UNCIAL 규칙 제38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1976년의] UNCITRAL 규칙 제36조의 엄격한 범위는 예를 들어 이란-미국 중재판정부의 여러 결정에서 재확인되었다(원문 강조표시)).

⁸ L.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ICCA Congress Series No. 15)* (A. Jan van den Berg ed., 2011), **Exh RLA-174**, 280면(강조표시 추가).

7. 다른 해설자들 역시 제 38 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증인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경우,⁹ 동사에 “않는다(not)”를 누락한 경우,¹⁰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혼동한 경우,¹¹ 중재판정문에서 언급된 날짜,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서신에서 발췌한 인용구를 정정할 경우 등의 기계적인 오류들에 불과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¹² 이러한 오류와 동등한 수준의 계산상 오류에는 숫자의 합이 안 맞거나, 소수점과 쉼표를 반대로 쓰거나, 통화를 혼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¹³

8. 이러한 점은 (관정부 규칙에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¹⁴) 이란-미국간 청구의 관정부 판단에 잘 나타납니다:

(i) *American Intl Group, Inc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에서 관정부는 “U.S. \$2,857,153” 금액의 오타를 정정하여 “U.S. \$2,857, 857,1543”로 표시하였습니다.¹⁵

(ii) *Uiterwyk Corp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에서 관정부는

⁹ J. Paulsson and G.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Exh CLA-205**, Commentary on Section IV, 제38조, 제5항.

¹⁰ T. Webster and M. Bü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and Materials* (5th ed., 2021), **Exh CLA-209**, 제6장, 617면, 제36-5항.

¹¹ M. Scherer, L. Richman, et al., *Arbitrating under the 2020 LCIA Rules: A User’s Guide* (2021), **Exh CLA-208**, 제22장, 제71-73항.

¹² J. Choong, M. Mangan, et al.,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2nd ed., 2018), **Exh CLA-204**, 제14장, 제14.60항.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2면, 제B(1)항(“당사자 이름의 오타, 부정확한 일자 또는 오역”의 정정을 언급함)도 참조.

¹³ T. Webster and M. Bü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and Materials* (5th ed., 2021), **Exh CLA-209**, 제6장, 617면, 제36-5항.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24장, 10면(“대부분의 정정은 실제로 수학적 또는 계산상 오류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 표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침표가 쉼표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권 서수 체계의 특징입니다.”);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1면, 제B(1)항(“소수점 위치 실수나 서명 누락과 같은 중재판정문의 오류 또는 누락”의 정정을 언급함)도 참조.

¹⁴ 1983년 이란-미국간 청구 관정부 규칙 제36조 참조. 본 조항은 2013년 UNCITRAL 규칙 제38조와 일치하는 관련 부분입니다.

¹⁵ *American Intl Group, Inc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판정문 번호 93-2-3(1983. 12. 19.), 4 Iran-US CTR 96, 111 (1983-II)에서 재인쇄됨,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5면에서 인용됨.

“청구인에게 판정된 총 금액이 일부판정문의 앞 단락에 언급된 금액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계산상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¹⁶

(iii) *Harold Birnbaum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에서 판정부는 특정 자산의 총 가치를 잘못 합산한 “수학적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1,084,175,345 리알”로 표시된 가치를 “1,100,253,669 리알”로 정정하였습니다.¹⁷

9. 반대로 UNCITRAL 규칙 제 38 조는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대한 개념적 오류”¹⁸ 또는 “법적 분석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¹⁹의 정정 또는 “중재판정문의 논리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²⁰ 따라서 중재판정부에게 “증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본안의 판단을 바꾸며, 기존 중재판정문에서 누락되었던 새로운 사실관계와 명령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거나²¹ 중재판정부에게 “계산에 사용된 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정정 요청은 부적절합니다.²²

B. 대한민국의 정정 요청

10.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정정 요청은 두 가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중재판정부가 세후 추가지급금 수치를 사용한 것에는 단순명백한 오류가 없다는 것이며(**I**); 설령 그러한 오류가 있었다고

¹⁶ *Uiterwyk Corp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판결 번호 375-381-1(1988. 11. 22.),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5면에서 인용됨.

¹⁷ *Harold Birnbaum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판정문 번호 549-967-2에 대한 정정(1993. 7. 19.),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6면에서 인용됨.

¹⁸ J. Paulsson and G.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Exh CLA-205**, Commentary on Section IV, 제38조, 제5항.

¹⁹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2022), **Exh RLA-175**, 제24장, 10면.

²⁰ M. Moser and C. Bao, *A Guide to the HKIAC Arbitration Rules* (2nd ed., 2022), **Exh CLA-207**, 제11장, 제11.89항.

²¹ M. Scherer, L. Richman, et al., *Arbitrating under the 2020 LCIA Rules: A User's Guide* (2021), **Exh CLA-208**, 제22장, 제73항.

²² J. Ragnwaldh, F. Andersson, et al., *A Guide to the SCC Arbitration Rules* (2019), **Exh CLA-206**, 제6장, 143면.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는 제 38 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

1.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는 단순명백한 오류가 없습니다**

11. 한국은, 중재판정부가 세전 추가지급금의 가액을 적용하려는 “명시적인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후 가액을 적용하여²³ “부지불식간” 오류 내지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합니다.²⁴ 한국은, 청구인의 손해 산정에는 세전 추가지급금의 가액이 반영됐어야 했으나 청구인이 심리 후 답변서면에 그러한 가액을 명시하지 않는 바람에 중재판정부의 오류가 일부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²⁵ 한국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12. **첫째**, 한국의 정정 요청이 시사하는 바와 달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심리 후 답변서면에 세전 추가지급금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는 한국의 주장일 뿐임)으로 인해 그 어떤 혼동도 겪은 바 없습니다. 청구인은 심리 후 서면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추가지급금이 “원천징수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²⁶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 이 단락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추가지급금의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²⁷ 또한 당사자들은 추가지급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이미 기존 서면을 통해 주장한 바 있으므로,²⁸ 한국이 정정 요청에서 하는 주장, 즉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손해 산정에 추가지급금을 반영할 경우 한국이 정정 요청에 상세히

²³ 한국의 정정 요청, 제10항.

²⁴ 한국의 정정 요청, 제2항, 제7항, 제12항.

²⁵ 한국의 정정 요청, 제21항.

²⁶ 청구인의 심리 후 답변서면(심리 후 답변서면), 2022. 5. 18., 제102항.

²⁷ 중재판정문, 제936항(청구인의 심리 후 답변서면, 2022. 5. 18., 제102항 인용).

²⁸ 특히 한국은 자신의 제1차 심리 후 주장서면에서, “청구인 또는 엘리엇 그룹 소속 단체가 ... ‘추가 지급’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한국에게 ‘추가 지급’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정중히 구하였습니다(한국의 심리 후 주장서면(이하 “**심리 후 주장서면**”), 2022. 4. 13., 제234항, 제236(b)항).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추가지급의 세후 가치만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심리 후 주장서면, 2022. 4. 13. 제238항(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세후 가액이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도 참조.

설명한 산식 등을 활용하여 세전 가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서면에서 이미 펼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러한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쟁점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국은 지금에 와서야 정정 신청의 외관을 취한 판정 후 서면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지만,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 둘째로, 중재판정부가 세후 추가지급금을 “의도치 않게” 적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중재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후 65,902,634,943 원의 추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언급합니다.²⁹ 즉 중재판정부는 의도적으로 세후 추가지급금을 채택한 것입니다.³⁰ *Fereydoon Ghaffari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의 경우, 이란-미국간 청구의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며, “현재 청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고려하여” 관련 수치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적용된 이율에 대한 정정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³¹ 본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고려하여 세후 추가지급금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14. 셋째로, 한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 손해 산정의 일관성을 위해 세전 가액만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중재판정문을 왜곡하는 것입니다.³²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의

²⁹ 중재판정문, 제906항(강조표시 추가). 중재판정문, 제936항(청구인의 심리 후 답변서면, 2022. 5. 18., 제102항 인용)도 참조.

³⁰ 중재판정문, 제936항.

³¹ *Fereydoon Ghaffari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판결 번호 DEC 123-968-2(1995. 10. 30.), 31 Iran-US CTR 124, 124-25 (1995)에서 재인쇄됨,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20면에서 인용됨(강조표시 추가).

³² 한국의 정정 요청, 제10항, 중재판정문, 제936항 인용.

매각 대금을 세전 가액으로 반영했는데, 이는 동일한 주식을 매수할 때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과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³³ 이러한 접근법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동일 주식의 매수·매각 대금 가액을 일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일견 논리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Mr. Boulton 도 청구인의 (추가지급금이 아닌) 순거래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세전 가치를 반영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이 점을 같은 문장에 언급했다는 사실 역시 중재판정문을 표현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³⁴

935. 2015 년 7 월 16 일 가치평가일까지 청구인의 삼성물산 지분 가치는 주당 69,300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삼성물산 지분 전체(11,125,927 주)에 대한 총 가치평가가 771,026,741,100 원 내지 약 7,710 억 원(매수청구 주식 7,732,779 주의 535,881,584,700 원과 나머지 3,393,148 주의 235,145,156,400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936. 이어서 청구인은 본건 합병 발표 전에 매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또한 이후 본건 합병비율에 따라 2015 년 9 월 14 일에 신설 삼성물산 주식 2,707,157 주로 교환됨) 매수청구 주식을 1 주당 57,234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주당 총 59,050 원에 매도하였다. 위 금액은 총 456,620,599,950 원 내지 약 4,566 억 원에 달하거나, 세후 4,020 억 원이다. *중재판정부는 세전 금액이 일관성을 위해 고려할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Mr. Boulton 은 청구인의 거래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금액도 고려하였다.*
[...]

15. 일관성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언급은 이것이 전부이며,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일관성 등의 이유 때문에 추가지급금에 “의도적으로” 세전 가액을 적용하려 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추가지급금이 세후 기준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해당하는 가액을 선택한 것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계산상 오류를

³³ 중재판정문, 제934항.

³⁴ 중재판정문, 제935-936항(강조표시 추가).

범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2. 대한민국의 정정 요청은 제 38 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16. **설령**, 한국이 중재판정문 중 판정부의 의도치 않은 오류를 특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오류와 한국이 구하는 정정은 제 38 조의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한국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 중재판정문을 정정하기 위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서면에 명시된 추가지급금의 가액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³⁵ 청구인의 추가지급금에 대한 세전 가액을 그 자체로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술 공식을 채택해야 한다.
- (ii) 중재판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판단에 대한 서면 제출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a) 청구인과 삼성물산간 합의서의 조건을 검토하고 아울러 해당 문서가 추가지급금의 세전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인지 확인하고, (b) 한국의 심리 후 서면 중, 한국 법원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에 대한 추가 지급을 명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추가지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된 부분을 채택하고,³⁶ (c) 2022년 4월 14일 한국 대법원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대법원이 주당 66,602원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확정하였음을 확인하고, (d)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운 산술 공식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추가지급금에 대한 새로운 세전 가액을 도출해야 한다.³⁷

³⁵ 중재판정문, 제936항, 청구인의 심리 후 답변서면, 2022. 5. 18., 제102항 인용 참조.

³⁶ 한국의 심리 후 주장서면, 2022. 4. 13., 제234항.

³⁷ 한국의 정정 요청, 제14-20항.

(iii) 또한 새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수급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에 대하여 하나가 아닌 “일련의” 정정을 해야 한다.³⁸

17. 한국의 정정 요청은 UNCITRAL 규칙 제 38 조의 “제한적인 권한”³⁹ 과 “엄격한 범위”⁴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는 정정은 오탈자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계산적 오류, 예컨대 중재판정문에 이미 반영된 값에 대한 합산의 오류, 소수점과 쉼표를 반대로 쓰거나 통화를 혼동한 오류 등에 대한 정정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주장은 중재판정부가 세전 추가지급금의 가액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이는 추가지급금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판정 전 서면에서 전혀 제기한 적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및 분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재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추가지급금의 세전 가액 산출을 위한 증거를 중재판정부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사실 증거를 재검토 및 재해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사실 관계 판단 및 청구인의 손해 산정에 사용된 방식의 조정을 중재판정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8. *American Bell Intl Inc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에서 이란-미국간 청구의 판정부는 피청구국들이 “판정문에서 계산의 기반이 된 일부 판단의 재고려 및 수정을 목적으로 하여 증거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재주장을 제출하였다”라는 이유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⁴¹ 한국의 정정 요청은 동일한 근본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손해 산정 문제를 재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³⁸ 한국의 정정 요청, 제20항(강조표시 추가).

³⁹ 상기각주 7 참조.

⁴⁰ 상기각주 8 참조.

⁴¹ *American Bell Intl Inc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판결 번호 DEC 58-48-3(1987. 3. 19.), 14 Iran-US CTR 173, 173-74 (1987-I)에서 재인쇄됨, D. Caron & L.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nd ed., 2013), Exh RLA-173, 제26장, 818면에서 인용됨(강조표시 추가).

수 없으며, 이는 제 3 차 심리 후 서면을 제출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요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19.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정정 요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⁴² 한국은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문의 취소를 신청하면서 당해 취소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사본을 중재판정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국 중재법 제 68 조상 “중대한 하자”가 한국의 취소 신청 근거 중 일부임이 드러나며, 이러한 하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 정정 요청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68 조에 의한 신청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부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 38 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제 68 조에 의한 신청을 하려면 한국은 실질적인 불공정을 초래한 심각한 절차적 부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가 손해산정 방식에 특정 단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해당 단계는 한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적도 없고 특정 증거를 통해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⁴³ 요컨대 청구인은 중재판정문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한국의 실망스러운 주장을 배척하고 제 38 조를 충실하게 적용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III.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문에서 제 37 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호성을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0. 제 37 조는 판정문 중 모호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정문에 대한 해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재판정문의 정정이나 수정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 37(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문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⁴² 청구인의 정정 요청, 제11항.

⁴³ 오히려, 중재판정부가 제38조에 의한 정정을 통하여 손해산정 방식에 그와 같은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제 37(1)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에서 특정 문구나 구두법이 불분명(이해할 수 없거나 모순된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함)”한 중재판정문에 대한 해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⁴⁴ 따라서 해명한다 함은 기존 판정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문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 또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⁴⁵
22. 한국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중재판정문의 이행을 위하여 해석이 필요한 “모호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⁴⁶ 구체적으로, 한국은 “판정 전 이자가 계산될 통화와 관련하여 판정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즉 적용 통화가 미국 달러화로도 원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⁴⁷ 한국은 이러한 모호성이 생긴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에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고 기재하고, 이어서 한국에게 미국 달러화로 명시된 청구인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⁴⁸ 또한 한국은 세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경우에도 어떠한 날짜를 기준으로 원화/미국 달러화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⁴⁹
23. 그러나 사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중재판정문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습니다.
24. 첫째,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가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⁵⁰ 맥락상 판정 전 이자가 적용되는 통화로 대한민국 원화를 언급한 것은 한국 법정이율인 연 복리 5%가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판정 전 이자의 확정 금액이 실제로 원화로

⁴⁴ D. Caron and L. Reed, *Post Award Proceedings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1(4) *Arbitration International* 429 (1995), **Exh CLA-211**, 452면(2013년 UNCITRAL 규칙 제37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1976년 UNCITRAL 규칙 제35조를 인용함) (강조표시 추가).

⁴⁵ J. Paulsson and G.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Exh CLA-205**, Commentary on Section IV, 제37조, 제2항.

⁴⁶ 한국의 정정 요청, 제23항.

⁴⁷ 한국의 정정 요청, 제27항.

⁴⁸ 한국의 정정 요청, 제26항.

⁴⁹ 한국의 정정 요청, 제27항.

⁵⁰ 중재판정문, 제961항.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결정이었다면, 해당 부분의 바로 앞 문장인 “청구인이 미국 달러화로 판정한 [판정 전 이자를 포함하는] 배상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⁵¹ 손해배상 지급에 적용될 통화에 관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협정상 배상의 지급[을] 미국 달러로 [받을]”⁵²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주문(*dispositif*)에서 판정 전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⁵³

25. 둘째로, 어떠한 날짜를 기준으로 원화/미국 달러화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점은 없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 어떤 모호한 용어 사용없이, “대한민국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적절한 날이 본 판정일이라고 판단한다”며, 2023년 6월 20일이 기준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⁵⁴

26. 셋째로, 한국은 판정 전 이자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계산되든지, 아니면 원화로 먼저 계산된 뒤 미국 달러화로 변환되는지와 관계없이, 어차피 동일한 금액의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중재판정문에 대한 “해명”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판정 전 이자 포함) 산정에 있어서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⁵⁵ 따라서, 이는 한국의 정정 요청에 명시된 “중재판정문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또한 정확히 같게 도출됨을 의미합니다.⁵⁶

⁵¹ 중재판정문, 제961항(강조표시 추가).

⁵² 중재판정문, 제952항(강조표시 추가).

⁵³ 중재판정문, 제995(c)항.

⁵⁴ 중재판정문, 제952항.

⁵⁵ 중재판정문, 제952항, 제961항.

⁵⁶ 중재판정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손실은 68,744,114,123원 내지 판정일 당시 미국 달러화로 환산될 경우 53,586,931.00달러로 환산됩니다(중재판정문, 제948항 및

27.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 중 진정으로 모호한 점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의 해명 요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IV. 신청취지

28.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게 다음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 (i) 한국의 중재판정문 정정 요청과 한국의 중재판정문 해명 요청 등, 한국의 정정 요청에 대한 전부 기각 및;
 - (ii) 한국의 정정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법률 비용 및 이자는 한국이 청구인에게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는 명령.

제952항 참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은 연 복리 5%의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에 따라 판정일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로 환전되는 경우, 총 지급 이자는 동일할 것입니다.

청구인을 위하여 정중하게 제출합니다.

Three Crowns LLP

Constantine Partasides KC
Dr. Georgios Petrochilos KC
Elizabeth Snodgrass
Simon Consedine
Nicola Peart
YiKang Zhang
Julia Sherman
Three Crowns LLP

Beomsu Kim
Young Suk Park
KL Partners

Michael S. Kim
Andrew Stafford KC
Robin J. Baik
Kunhee Cho
S. Michael Bahn
Kobre & Kim LLP

2023 년 8 월 1 일